



농식품부·기후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민원·수계 인접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및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교육·홍보 연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로 가축분뇨 환경관리 수준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과 퇴비·액비 살포 기준 등 축산농가 등의 환경관리 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농·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법령 위반 사례 소개 및 법령 준수 사항을 사전 교육·홍보한 바 있다.

부처 간 교육·홍보 협업으로 지난해 지도·점검의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를 높이고 현장 관리 수준을 자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도 점검 결과 위반율: ('24.하) 6.2% → ('25.상, 교육·홍보 실시) 5.8 → ('25.하) 4.5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지도·점검 전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1부.

2.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계획 1부.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손효림 (044-201-2357)
		담당자	주무관	신민경 (044-201-2363)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현왕진 (044-201-7080)
		담당자	주무관	이신영 (044-201-7077)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점검 사항

1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유입 우려 포함)하는 행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반



2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악취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9호



3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 변경허가(50%이상 증설) 또는 변경신고(50%미만)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의 축사 주변 유출,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을 하지 않는 행위 등 배출시설·처리시설 운영 관리기준 위반 행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4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에 관한 사항

-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경종농가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 퇴비·액비의 살포지 외 장소에서의 살포 또는 살포기준 미준수, 퇴비·액비 투기,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않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위반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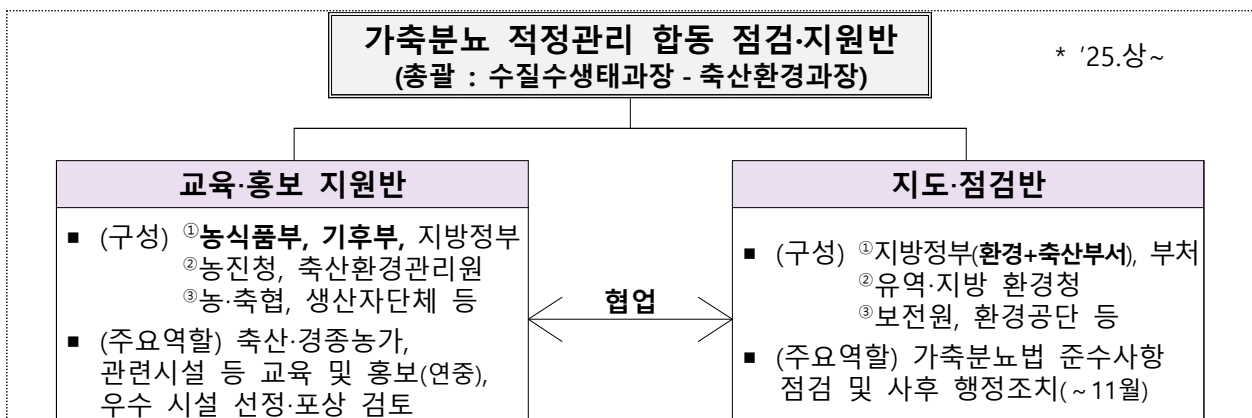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

□ 배경 및 목적

- 관계 부처 및 유관 간 협업으로 교육·홍보 병행 및 관련 시설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 목적 달성 유도

□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 전략

- 지도·점검 전 관련 기관 및 축산 생산자단체 등에 지도·점검 중 주요 위반 사례 소개 및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 교육·홍보 강화
 -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로 지속적인 축산환경 인식 개선 필요
 - * ▲방류수수질 및 퇴·액비화 부숙도,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관리, ▲악취 및 배출·처리시설 관리 기준, ▲관리대장 작성·보관 등 위반 사례 및 법적 준수 사항 안내
 - **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 ('24.하) 6.2% → ('25.상, 교육·홍보 실시) 5.8 → ('25.하) 4.5
- 민원, 수계 인접,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위반 이력이 있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중심으로 환경오염 위험 요인 집중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및 관련 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수질오염 현장 관리 수준 제고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강화
 - * ▲악취·수질오염 관련 민원 다발 시설, ▲강 본류 및 지류 인접 시설, ▲부숙도 검사 미이행 또는 부숙도 기준 미달 농가 및 시설, ▲최근 2년 내 위반 이력 시설 등



□ 조치 사항

- 지방정부(시·도) 자체 점검 계획 수립(~3.27, 기후부 회신) → 지역별 지도·점검(~6.30) → 결과 보고(~7.10, 기후부 제출)